

## ■ 인지세 안내

「인지세법」제 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상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'로 과세 대상이며,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상 '도급에 관한 증서'로 과세 대상입니다.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 납부 기한 · 방법 (※인지세법 제1조,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)

과세 대상	-부동산 계약서 / 분양권 전매계약서 /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 ※ 관련법령 : 인지세법 1조,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
납부 기한	-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
납부 방법	-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 -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, 보관

## ■ 인지세 과세 문서 및 세액

과세 문서	세액	수입 인지 금액	아파트 계약서 해당 타입	발코니 계약서 해당 타입
아파트공급계약서 / 발코니확장계약서	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	2만원	해당없음	59타입
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4만원	해당없음	84타입 / 114타입
	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5만원	59타입 / 84타입	해당 없음
	10억 초과	35만원	114타입	해당 없음

## ■ 인지세 부담 금액 [공급 계약서 / 발코니&옵션 수입인지 계약 시 제출]

구분	59타입	84타입	114타입
공급계약서(연대 납부)	7.5만원	7.5만원	17.5만원
발코니&옵션 계약서(연대 납부)	1만원	2만원	2만원

※ 서류접수 및 계약시 수입인지(공급 계약서/발코니&옵션 계약서)를 발급 받아 당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
 ※ 공급계약서와 발코니&옵션 계약서에 관련된 수입인지는 사업 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(1/2씩) 납부합니다.

## ■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안내

### ① 전자수입인지 포털사이트 접속(www.e-revenuestamp.or.kr)

####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#### ③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#### ④ 납부 정보 입력



#### ⑤ 납부 및 출력



용도	과세문서종류	금액	건수
인지세납부	1. 부동산 등 소유	59,84타입: 7만5천원 114타입: 17만5천원	1
	3. 도급 또는 위임 등 문서	59타입: 1만원 84,114타입: 2만원	1